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97

발의연월일: 2022. 9. 16.

발 의 자: 송석준 · 김학용 · 김상훈

최춘식 • 조경태 • 성일종

태영호 • 이종배 • 강대식

정우택 • 박대수 • 윤창현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신당역 여성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보복범죄로 스토킹범죄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바 있음.

기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근무동선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장소에서 대기하다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나,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청구를 기각하는 등 가해자가 활개를 칠 수 있도록함으로써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노출했음.

이에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점조치 중에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(단, 스토킹범죄의 반복성, 지속성, 긴급성이 사

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해제), 현행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점조 지 중에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함(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신설).
- 나.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없고 스토 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사라진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해제함(안 제7조제5항제 2호라목 신설).
- 다.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(안 제18조제3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#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 제7조제5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라. 제4조제1항제3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없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경우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5.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 사법경찰	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
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	
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	
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	
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	
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	
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	
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	
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	
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	
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	
수 있다.	<u>.</u>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)	제7조(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긴급응급조치(제4항에 따라	5
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	
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	
다.	

- 1. (생략)
- 2.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

가. ~ 다. (생 략) <신 설>
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 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 하 "잠정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~ ⑤ (생 략)
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・② (생

1. (현행과 같음)
2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제4조제1항제3호의 긴급
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
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
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없
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
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
황이 사라졌다고 판단할
<u>경우</u>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
조치) ①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• ② (현행

략)

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과 같음) <u><삭 제></u>